

---

**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(안)  
의견청취의견 검토보고서**

---

2010년 4월 15일

**행 정 건 설 위 원 회**  
**전문위원      신 승 관**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(안) 의견청취의 건 검토보고서

## 1. 안 건 명

- 서울특별시 마포구 풍수해저감 종합계획(안) 의견청취의 건

## 2. 제출일자 및 제출자

- 2010년 4월 6일, 마포구청장

## 3. 위원회 회부일자

- 2010년 4월 9일

## 4. 관계법령

-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13조제2항

## 5. 검토의견

- 본 의견청취의 건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의 규정에 태풍·홍수 등 풍수해로 인한 피해지역 및 예상지역의 예방과 대책을 지역특성에 맞게 5년 단위로 중·장기적인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구의회 의견청취하여 그 내용을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- 본 계획안의 주요내용으로는

풍수해 위험요인 분석을 위해 하천, 내수, 토사, 사면, 바람 등에 대한 재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,

- 이에 따른 풍수해 저감대책으로는

하천재해는 재해요인 없으므로 하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고,

내수재해는 2020년도까지 배수분구 정비사업을 마치며, 빗물펌프장은 30년 빈도 폭우를 대비하여 증설을 하고, 사면·토사 재해는 노고산과 매봉산, 와우산에 대한 사면보강 및 녹화를 하며, 기타 상암 지하차도는 강우시 순찰 및 수해예방활동을 강화하고, 지속적인 시설물 유지관리를 하며, 도로변 불량한 빗물받이는 개선하고, 가을철 낙엽에 의한 우수 빗물받이는 주기적인 청소 및 유지 관리를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음.

○ 본 계획안 수립의 기대효과는

-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의한 통수능 확보 및 생활환경 개선 효과
- 빗물펌프장 단계별 증설에 의한 수방능력 향상
- 집중호우 및 기상이변에 의한 저지대 침수 예방
- 재난 예·경보 시스템 구축에 의한 재난 대응 예방 활용 효과
-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예방 등의 효과

○ 본 계획안 수립을 위하여 마포구 행정구역 전체에 대하여 2009. 2. 9 ~ 2010. 4. 30까지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중에 있으며, 2009. 12. 16. 우리구청 수방상황실에서 관련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였고, 2010. 3. 31. 서강동 주민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한바 특별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음.

○ 본 계획안이 수립·시행되면 우리구에서는 풍수해로부터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서울시와 소방방재청에 계획승인을 요청하기 전에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여 완벽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, 수립된 계획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시행으로 우리구에서는 풍수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## 자연재해대책법

제16조 (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) ①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풍수해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5년마다 시·군·구풍수해저감종합계획(이하 "시·군·구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시·도지사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3.28>

②시·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·군·구종합계획을 기초로 시·도풍수해저감종합계획(이하 "시·도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수립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.

③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각각 시·도종합계획 및 시·군·구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사업시행계획을 심사한 후 풍수해저감사업비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할 수 있다.

⑤시장·군수·구청장 및 시·도지사가 각각 시·군·구종합계획 및 시·도종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.

⑥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·제18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도시계획·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의 수립·변경권자가 광역도시계획·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·군·구종합계획 및 시·도종합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.

⑦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·군·구종합계획 및 시·도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

제13조(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등)

①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

1. 지역적 특성 및 계획의 방향·목표에 관한 사항
2. 유역현황, 하천현황, 기상현황, 방재시설현황 등 재해발생 현황 및 재해위험 요인 실태에 관한 사항
3. 풍수해 재해복구사업의 평가·분석에 관한 사항
4. 지역별·주요시설별 풍수해위험 분석에 관한 사항
5. 법 제18조의 지구단위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한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
6. 풍수해 저감을 위한 자연재해위험지구 지정 및 정비에 관한 사항
7. 풍수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종합대책 등에 관한 사항
8. 제14조제7항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서 정하는 사항

②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미리 관계기관과 협의하고,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

**한 공청회를 개최하며,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.**

③ 제2항의 공청회 개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

**제14조(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승인 등)**

①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면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풍수해저감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자료
2. 공청회 개최 등 의견수렴 결과
3.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
4. 관계기관 협의 등에 필요한 서류

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풍수해저감종합계획안이 제7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세부수립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하기 전에 관계분야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이를 반영할 수 있다.

④ 전문가의 위촉 등 제3항에 따른 전문가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.

⑤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.

⑥ 소방방재청장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계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, 송부받은 시·도지사 및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⑦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세부수립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한다.